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신규 및 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1.
복지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신규 및 재위탁) 동의안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아동가족과)
- 제출일자: 2025. 11. 14.(금)
- 회부일자: 2025. 11. 14.(금)
- 상정 및 의결: 제31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2025. 12. 1.)

2. 제안이유

-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 위탁운영, 아이빛어린이집 위탁 기간 만료일 도래에 따른 재위탁 추진을 위해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현황

- 신규

시설명	소재지	규모	정원(안)	운영방식	세대수
달서푸르지오 시그니처어린이집(가칭)	본리동358-3번지 (본리동)	607.8655 m ² (지상2)	50명 (예정)	민간위탁	993

○ 재위탁

시설명	소재지	규모	정원/ 현원	운영 (원장)	위탁기간
아이빛 어린이집	조암남로182(유천동, 월배아이파크1차)	214m ² (지상1)	43/42	現 김정자	2021. 4. 1. ~ 2026. 3. 31.(5년)

나. 위탁개요

- 위탁사무
 - 어린이집 운영(아동 입소·상담 등 보육, 인사·회계 등)
 - 어린이집 시설 및 물품 등 재산관리
- 위탁기간 : 5년(신규, 준공 일정에 따라 추후 결정)
- 수탁자 선정방식: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보육분야 전문가(대학교) 자문

4.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 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9조2(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및 제24조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
-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5조(위탁운영) 및 제16조(위탁기간 및 계약)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및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5.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제3항 및 제24조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신규 및 재위탁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대하여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의회의 동의를 거쳐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 본리동 358-3번지 일원의 달서푸르지오시그니처 아파트는 총 993세대로 2026년 3월 준공 예정이며, 2025년 9월 11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대한 동의 의견을 제출하였고, 2025년 10월 21일 설치·운영 협약서(안)을 체결하여 신규위탁 동의를 구하는 것이며,
- 아이빛어린이집(조암남로 182, 월배아이파크1차)은 2018. 11. 1. 열린 어린이집으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유지 중이고, 2025. 3월 한국보육진흥원 평가 결과 영역별 우수를 받았으나 현재 위탁체(원장 김정자)의 재계약 포기에 따라 재위탁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신규 및 재위탁 대상에 대하여 위탁체를 공개 모집하고,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으로 위탁 기간은 5년임.
- 보육 서비스는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 조례 제4조의 대상 사무에 해당하고, 제5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를 거쳐,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6. 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